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4조에 규정된 대표도서관의 위탁 제외 규정이 제16조제1호의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 사업과 중복으로 규정되어 이를 정비함.
- 나. 도서관의 부속시설 다양화로 관장의 사용허가 시설 중 조례에 각 호로 기재된 다목적 홀과 시청각실의 명칭을 삭제하고 별표2를 정비함.
- 다. 새로 신설된 인천광역시 청라호수도서관외 3개소의 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함.
- 라. 도서관 시설대관의 불합리한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유사 시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용료를 현실화 함.

2 주요내용

- 가. 진흥원의 사업 중 대표도서관 제외 내용을 삭제하고 시립도서관의 수탁관리·운영으로 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16조제1호)
- 나. 각 호에 규정된 관장의 사용허가 시설명칭을 삭제함(안 제29조)
- 다. 신설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새롭게 삽입하고 시설 대관의 불합리한 사용기준 정비와 사용료를 현실화 함(안 별표1,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ysi33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립도서관의 수탁관리·운영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33조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시설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u>대표도서관을 제외한 시립도서관 운영</u> 2. ~ 5. (생략)	제16조(사업) ----- -----. 1. <u>시립도서관의 수탁관리 · 운영</u> 2. ~ 5. (현행과 같음)
제29조(사용료) ① <u>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u> 1. <u>다목적 홀</u> 2. <u>시청각실</u> ② (생략)	제29조(사용료) ① <u>법 제33조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남동구 인주대로776번길 53(구월동)	
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	남구 경인로 218(도화동)	
인천광역시 영종도서관	중구 영종대로 85(운서동)	
인천광역시 율목도서관	중구 답동로24번길 17(율목동)	
인천광역시 청라호수도서관	서구 크리스탈로 59(경서동)	
인천광역시 영종하늘도서관	중구 하늘중앙로 132(중산동)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서관	서구 담지로 24(연희동)	
인천광역시 송도국제기구도서관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별표 2]

도서관 사용료(제29조 관련)

1. 시설의 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강당	1시간	30,000	○ 1시간 미만 사용도 1시간으로 봄 ○ 토·일·공휴일 및 휴관일은 기준요금의 20% 가산 ○ 시설내 부속설비는 무료사용 (단,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 사용자가 비용부담)
다목적 홀			
공연장			
회의실			
시청각실	1시간	15,000	
세미나실			
냉 · 난방	1시간	15,000	○ 기준시간 초과시 기준요금의 20% 요율을 추가징수

2. 자료 복사료

구 분	기준	금액(원)	비 고
흑백	A4용지 단면	40	
	B4용지 단면	50	
칼라	A4용지 단면	100	
	B4용지 단면	150	